

 신한대학교	대학원 장학 규정	규정번호	3-5-14
		운영부서	대학원 교학팀

제정 2014.02.12.

개정 2025.10.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한대학교 대학원의 교내외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 장학생이란 “이 대학원의 재원에서 지급하는 장학생”을 말한다
2. 교외 장학생이란 “교외의 장학재단, 사회단체 및 기업 또는 개인 등이 당해 재원에서 지급하는 장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신한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교외장학재단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대학원의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장학생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장학정책 수립) 총장은 매년 대학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는 교내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 신청) ① 학생이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

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그 밖의 증명서류

② 당해 학기 성적에 과락이 있는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장학생 선발) 장학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개정 2022.1.28.>

1. 교내 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서 [별표 1]의 장학생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2. 교직원 공로장학금은 학교 발전기여 정도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하는 금액과 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3. 공무원 및 군인 재학생 장학금은 근무 기관장 추천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며 지급하는 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4. 행정인턴장학생, 연구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5. 교외 장학생은 해당 지급기관 등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 등) ①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하여 감면 처리한다.

②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따로 지급한다.

③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해당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④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장학금 지급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장학금, 행정인턴장학금, 특별장학금은 중복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다. 그 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제11조(장학금 지급중단)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해당학기 미취득(F학점) 교과목이 있는 경우
3. 휴학, 자퇴, 제적, 퇴직 등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
5. 장학금 신청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부 칙 <2019.0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승인된 2019학년도 대학원 신입생의 장학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08.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승인된 2019학년도 대학원 재학생의(2019학년도 신입생) 장학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내장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외국인 재학생 및 2020학년도 외국인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내장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대학원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승인된 2020학년도 대학원 재학생의 장학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03.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6.30.>

이 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7.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내장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대학원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승인된 2020학년도 대학원 후기 신입생의 장학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0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내장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동문장학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승인된 2021학년도 대학원 신입생의 장학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01.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내장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동문장학, 홍보단장학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승인된 2022학년도 대학원 신입생의 장학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06.17.>

이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2.09.>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2.29.>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6.10.>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0.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내장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내장학금 종류

〈가정 2015.02.01., 2016.11.16., 2017.07.21., 2019.02.18., 2019.08.23., 2019.11.29., 2020.02.29., 2020.06.30., 2020.07.29., 2021.02.17., 2022.01.28., 2022.06.17., 2023.02.09., 2024.02.29., 2025.06.10., 2025.10.16.〉

■ 신입생

구 분	장학종류	지급대상 및 기준	장학금액	비 고
신 입 생	총장장학	해당학기 신(편)입생으로 입학한 자	수업료 40%	입학학기
		총장 추천서를 받은 자 (매 학년도 2명 이내 선발) * 1, 2학기 적용 후 3, 4학기는 총장 추천 확인 후 적용	수업료 100%	휴학시 지급 제외
	교직원 장학	학교법인 신홍학원이 경영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 교원: 전임교원 ■ 직원: 무기계약직 및 일반직 ■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수업료 50% 일정액	
	교직원 직계가족 장학	학교법인 신홍학원이 경영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자녀	수업료 70%	
	동문장학	신한(신홍, 한북)대학교 졸업자 및 대학원 졸업자 * 학점은행제, 전공심화과정 졸업자 제외	수업료 50%	입학학기
		신한대학교 대학원 입학년도 대학 정규 학부 졸업자 (학점은행제,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졸업자 및 외국인 유학생 제외)	수업료 80%	입학학기
	공무원 및 군인 장학	공무원 및 군인으로 재직중인 자	수업료 50%	기관 장학 중복 금액 제외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대령급 이상 군인 * 매 학기 재직증명서 확인 후 지급	수업료 100%	
	행정인턴장학	대학원 행정 인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수업료 100%	
	가계곤란장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업료 50%	
	외국인 유학생 장학	외국인 유학생 입학 자격으로 입학한 자(1년 단기과정 입학생 제외)		
		■ 신한(신홍, 한북)대학교 졸업자 및 본교 국제처 한국어과정 4학기(1년) 이상 수료자	수업료 50%	입학장학금 (입학금)
		■ 이중언어과정 및 한국어 자체시험 충족자	수업료 30%	입학학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 3급 취득자	수업료 40%	입학학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 4급 취득자	수업료 50%	입학학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 5급 이상 취득자	수업료 80%	입학학기
		■ 협약 대학 및 기관	수업료 50%	입학장학금 (입학금)
		■ 총장 추천서를 받은 자 (매학기 10명 이내 선발)	수업료 100%	1~2학기 지급휴학시 지급 제외
		■ 협약 대학에서 모집시기(전기, 후기)별 등록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협약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15명당 1명)	수업료 100%	
	외국인 단기 과정장학	■ 1년 단기과정으로 입학한 자	수업료 30%	입학장학금 (입학금)
	창학이념장학	■ 본 대학 창학이념에 부합하는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 전도사 및 전문사역사	수업료 50%	
	특별장학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기부금, 기탁금 등 재원 범위에서 운영)	일정액	
	계약학과장학	계약학과 학생으로 산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일정액	
	기타	신한대학교 운영 비학위과정(15주이상 프로그램) 이수자, 신한대학교 대학원과 협약된 학점은행제 운영 평생학습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		입학장학금 (입학금)

재학생

구분	장학종류	지급대상 및 기준	장학금액	비 고
재학생	총장장학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4.5 이하인 자	수업료 40%	
		총장 추천서를 받은 자 (매 학년도 2인 이내 선발) * 1, 2학기 적용 후 3, 4학기는 총장 추천 확인 후 적용	수업료 100%	휴학시 지급 제외
	대학원장장학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 3.5 미만인 자	수업료 30%	
	교직원 장학	학교법인 신홍학원이 경영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 교원: 전임교원 ■ 직원: 무기계약직 및 일반직 ■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수업료 50% 일정액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교직원 직계가족 장학	학교법인 신홍학원이 경영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자녀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수업료 70%	
	동문장학	신한(신홍, 한복)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수업료 50%	4학기 내 휴학시 지급 제외
		신한대학교 대학원 입학년도 대학 정규 학부 졸업자 (학점은행제,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졸업자 및 외국인 유학생 제외)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2학기 - 3·4학기	수업료 80% 수업료 50%	
	공무원 및 군인 장학	공무원 및 군인으로 재직중인 자	수업료 50%	기관 장학 중복 제외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대령급 이상 군인으로 근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재(학)기당 기관별 1인 이내 선발 (지급) * 매 학기 재직증명서 확인 후 지급	수업료 100%	
	연구장학	국내·외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 완료한 자 (재학생 및 연구등록생)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 SCIE, SSCI, A&HCI, SCOPUS	최대500,000원	최대 1회 (논문게재료) 팀당
		논문퍼블리싱과목으로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완료한 팀	500,000원	
		논문퍼블리싱과목으로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완료한 팀	1,000,000원	
	행정인턴장학	대학원 행정 인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수업료 100%	
	모범학생장학	품행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주임교수 추천을 받은자 중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된 자	수업료 100%	해당학기
	가계곤란장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업료 50%	
	외국인 유학생 장학	외국인 유학생 입학 자격으로 입학한 자		
		■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 50%	해당학기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3.0 미만인 자	수업료 30%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 4.5 이하인 자	수업료 40%	
		■ 총장 추천서를 받은 자 (매학기 10인 이내 선발) * 1, 2학기 적용 후 3, 4학기는 총장 추천 확인 후 적용	수업료 100%	휴학시 지급 제외
		■ 협약 대학에서 모집시기(전기, 후기)별 등록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협약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15명당 1명)	수업료 100%	
	외국인 단기 과정장학	1년 단기과정으로 입학한 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3.0 미만인 자	수업료 20%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 4.5 이하인 자	수업료 30%	
	창학이념장학	본 대학 창학이념에 부합하는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 전도사 및 전문사역사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수업료 50%	
	특별장학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기부금, 기탁금 등 재원 범위에서 운영)	일정액	
	계약학과장학	계약학과 학생으로 산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일정액	

장 학 금 신 청 서

20 학년도 학기

신청 장학금명		지 급 액	%
학 번 (수험번호)		소속 대학원	
		학 과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신 청 사 유 (신청인)	(서명)		
추천사유 (주임교수)	(서명)		
첨 부 서 류			
위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신청 및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학원장학위원장 귀하			